

##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

332

제출년월일 : 2000년 9월 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개정이유

-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(법률 제16,928호, 2000. 7. 29)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도세조례에 신설하고, 기타 도세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### 주요골자

#### 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

-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
  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
  -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며,
  -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,
  -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(안 제9조의2)

## ② 군납업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대상 삭제

- 군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납업자의 신규등록을 받을 때 매 1건당 115천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, 동 법률이 폐지(법률5598호, 1998. 12. 28 공포, 1999. 3. 1 시행)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도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도세조례를 법과 일치되도록 관련조문을 삭제함

조례(안) : 별첨

근거법령 : 지방세법 제3조

기타 참고자료 : 별첨

##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심사청구의 심의·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”를 “심사청구를 심의·의결하기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5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 <u>제9조(지방세심의위원회)</u>         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 · 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~⑥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 <u>제9조(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)</u>          ①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③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5조(군납업등록의 세율) 군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군납업자의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115,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④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 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 으로 할 수 있다.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 &lt;삭 제&gt;</p>

**참 고 자 료**

- 지방세법 (부분발췌)
- 지방세법시행령 (부분발췌)
- 군납에관한법률폐지법률

## 관련법규 부분발췌

### ○ 지방세법

제3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·과세객체·세율 기타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.

### ○ 지방세법시행령 (2000. 7. 29 공포 : 대통령령 제16,928호)

제81조의2(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) ①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○ 군납에관한법률폐지법률

— 1998. 12. 28, 법률 제5598호 —

법률 제3550호 군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납조합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납조합(이하 “군납조합”이라 한다)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.

②종전의 군납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군납조합의 재산 및 권리·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8조(군납업 등록의 세율)를 삭제한다.